전 주 지 방 법 원

제 4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06가합4747 보험금
원 고	OO 주식회사
	전주시 덕진구
	공동대표이사 임OO, 박OO
	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선
피 고	1. OO 주식회사
	서울 종로구
	대표이사 하OO
	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영
	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현광활
	2. OO 주식회사
	서울 중구
	대표이사 김OO
	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동식
변 론 종 결	2007. 7. 19.
판 결 선 고	2007. 8. 9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, 피고 OO 주식회사(이하 '피고 OO'이라 한다)는 5천만 원, 피고 OO해상보험 주식회사(이하 '피고 OO'라 한다)는 135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 내지 10호증(가지번호 포함), 을 가 제1, 16호증, 을나 제4호증의 1,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원고는 2004. 5. 24. 소외 송OO에게 원고 소유의 전남 강진군 대지 및 그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소매점, 일반음식점 914.1㎡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와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사무실 54㎡를 임대기간 2004. 6. 1.부터 2007. 5. 31.까지, 임대보증금 2천만 원, 월임대료 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, 위 송OO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'OO마트'라는 상호로 슈퍼마켓(이하 '이 사건 슈퍼마켓'이라 한다)을 운영하였다.

나. 위 송OO은 이 사건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2004. 8. 11. 피고 OO와 슈퍼마켓

내의 동산, 시설, 집기비품에 관하여 보험금액 총 2억 5천만 원, 보험기간을 2004. 8. 11.부터 2005. 8. 11.까지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, 2004. 11. 12. 피고 OO해상과 슈퍼마켓 내의 상품 및 집기비품에 관하여 보험금액 총 1억 5천만 원, 보험기간을 2004. 11. 12.부터 2005. 11. 12.까지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각 체결하면서, 이 사건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건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보상받기로 하는 임차자 배상책임 담보특약(가입금액 : 피고 OO화재 5천만 원, 피고 OOO 1억 5천만 원)에 가입하였다.

다. 그 후 2004. 12. 27. 01:30경 이 사건 슈퍼마켓에서 화재(이하 '이 사건 화재'라 한다)가 발생하여 그곳에 있던 시설 및 집기비품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었다.

라. 위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다.

2. 주장 및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원고는, 위 각 보험계약의 임차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,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, 이 사건 화재는 보험계약자이자 임차인인 송OO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 또는 위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을가 제1 내지 16호증(가지번호 포함), 을나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

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송OO이 2004. 8. 11. 피고 OO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2004. 11. 초순경 피고 OO화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손OO에게 영암 OO마트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OO마트가 보험금 7~8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비하여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금 액수가 적으니 7~8억 원으로 보험금을 증액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슈퍼마켓 업종이 화재 등 위험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추가 보험 가입 및 인수를 거절당한 사실, 그러자 위 송OO은 피고 OOO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고OO에게 추가 보험가입을 요청하여 2004. 11. 12. 피고 OO과 슈퍼마켓 내의 상품, 집기비품, 임차자 배상책임에 관하여 추가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, ②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 주변에 새로운 슈퍼마켓들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슈퍼마켓의 영업이 매우 부진하였는데, 송OO은 이와 같은 영업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4. 11. 하순경부터 휴대폰 증정권 판매사업을 시작하였고, 2004. 12. 하순경에는 지역정보지에 이 사건 슈퍼마켓을 매매한다는 광고를 실었으며, 이 사건 슈퍼마켓의 매장관리책임자 소외 김OO은 부동산중개업소에 이 사건 슈퍼마켓의 매각을 의뢰하기도 한 사실, ③ 송OO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전날 특별한 용무 없이 광주, 나주, 강진, 장흥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22:30경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인 04:00경까지 소외 추OO를 만나 술을 마시며 보낸 사실, ④ 송OO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택시를 타고 목포로 가는 도중 이 사건 화재를 목격하게 되었는데, 당시 송OO은 OO마켓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O마켓과 이 사건 슈퍼마켓은 상당히 떨어진 위치에 있는데다 주변의 지형지물 등으로 인하여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사실, ⑤ 송OO은 추OO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목포에 있는 추OO 집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 당일 08:30경 화재 사실을 연락받은 후 택시를 타고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둔 장

흥으로 가는 길에 화재현장에 들렀으나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택시 안에서 화재현장을 확인하고 그대로 장흥으로 가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바로 강진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은 사실, ⑥ 이 사건 슈퍼마켓에는 3개의 출입구가 있는데, 출입구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송OO의 처인 소외 박OO과 종업원인 소외 오OO에 의해 모두 잠금장치가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, 그 열쇠 등은 위 박OO 및 종업원인 소외 김OO만이 소지하고 있었으며, 위 박OO과 오OO이 슈퍼마켓에서 퇴실한 후 이 사건 화재 발생 전까지 외부로부터 제3자가 침입한 흔적이 없었던 사실, ⑦ 한편, 이 사건 슈퍼마켓 내의 전기시설, 전기제품 등에서 발화원인이 발견되지 않았고,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화재 원인에 관하여 "발화부로 추정되는 화장지, 부탄가스 등 적재장소에서 발열, 발화될 만한 설비 등이 식별되지 않은 점, 기타 자연 발화될 만한 물질 등이 식별되지 않은 점, 발화부의 벽체 연소 형상이 'U'자형의 연소 특징이 식별되는 점 등으로 보아, 고온 화원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며, 인위적 화원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"이라는 감식 결과를 통보한 사실, ⑧ 최초 화재가 발생한 장소로 추정되는 직원식당에는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냉동, 냉장고의 실외기 배관을 건물 내부로 들여보내기 위한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 주위에 부탄가스통이 다수 적재되어 있었는데, 위 식당에서는 LP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곳에 부탄가스를 다량 적재해둘 필요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인위적인 방화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,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 사건 슈퍼마켓의 영업 및 송OO의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점, 특히 송OO이 피고 OO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슈퍼마켓의 처분

을 고려하고 있었던 점, 송OO이 이 사건 화재 전일과 당일 뚜렷한 용무나 이유 없이 도처를 배회하거나 지인을 만나는 등 사고 전후의 행적이 석연치 아니한 점, 이 사건 슈퍼마켓과 OO마켓의 위치 등 그곳 지리를 매우 잘 알고 있는 송OO이 OO마켓에 화재가 난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, 이 사건 화재 소식을 접한 뒤의 송OO의 행적 역시 자신의 전재산을 잃은 사람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, 이 사건 화재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송OO이 고의로 발생하게 한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므로,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.

3. 결론

따라서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승련 _____

판사 유현영 _____

판사 김이경 _____